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안) 발표

권오경 연구원

요약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 초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최소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로보어드바이스 알고리즘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임. 동 지침서를 통해 호주는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¹⁾는 2016년 3월 디지털 금융상품 자문 관련 규제의 하나로 의견수렴서(consultation paper)²⁾와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 초안³⁾을 발표함.
 - 디지털 금융상품 자문은 로보어드바이스(robo-advice)로 알려져 있으며,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금융상품 자문(automated financial product advice)을 의미함.
 - 이 과정에서 사람(human adviser)의 직접적인 개입은 배제됨.
 - ASIC는 3월 발표된 초안을 근거로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8월에 규제지침서를 최종 발표할 계획임.

- ASIC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 호주에서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은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호주금융서비스면허(AFSL)⁴⁾의 신규 소지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호주에서 금융자문을 위해서는 AFSL이 필요하며 로보어드바이스에도 적용됨.
 - 호주 성인의 약 20%만이 개인자문(personal advice)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⁵⁾ 편리하고 저렴

1)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2) ASIC(2016. 3), *Consultation Paper 254: Regulating digital financial product advice.*

3) ASIC(2016. 3), *Regulatory Guide 000: Providing digital financial product advice to retail clients.*

4)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잠재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s766B(3))에 따르면 개인자문⁶⁾은 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을 의미함.
- 호주의 금융상품 자문은 투자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종합적인 금융상품⁷⁾에 대한 자문까지 포함⁸⁾

■ 동 지침서는 로보어드바이저 면허를 받으면 최소한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 기존의 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

- AFSL 소지자는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s912(1)(e))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⁹⁾ 이에 로보어드바이저 책임자도 최소한의 훈련 및 기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이러한 자격요건이 로보어드바이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연인(自然人)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감안하여 지침서의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 후로 제안하고 있음.

■ 또한 금융자문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동 지침서에 따라 면허 소지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자는 금융상품 자문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알고리즘은 시스템 디자인, 테스트 계획, 보안, 업데이트, 인적 및 기술적 자원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인 자문업자에 의해 규제준수가 검토되어야 함.
-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하며 시정기간 동안의 자문 제공은 중단됨.

■ 종합해 보면,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지침서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발전의 강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kiri](#)

5) 호주에서는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문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대중의 자문시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6) 금융상품 자문은 일반자문(general advice)과 개인자문(personal advice)으로 나뉘며, 이 둘의 차이는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문을 하느냐의 차이임.

7) 호주에서의 자문대상 금융상품에는 은행상품(basic banking products), 보험상품(general insurance) 또는 복합적인 상품(combination of any of these products)으로 포괄적인 금융상품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문부터 재무설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8) 국내에서의 자문은 투자자문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의미하여 호주보다 좁은 의미의 자문에 해당됨(자문시장법 §6).

9)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으로는 학력, 시험, 경력 및 전문성 개발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Regulatory Guide 105 *Licensing: Organisational competence*).